

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제1조(계약목적)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 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고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일상생활, 의료, 재활, 여가, 치매 예방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안전한 노후생활유지와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.

제2조(이용정원) ① 각 사업내용별 이용자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주·야간보호센터의 정원은 법적사항을 준수하여 39명으로 한다.
2. 방문요양의 경우 별도의 정원규정을 두지 아니한다.

제3조(이용대상) ① 이용대상은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인정받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.

1. 주·야간보호 : 장기요양등급 1~5, 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사람
2. 방문요양(가정방문급여): 장기요양등급 1~5, 등급을 받은 사람
3. 기타 보호가 필요하다고 시설장이 인정한 자는 등급외자라도 이용을 할 수 있다.

제4조(이용신청) ① 센터 이용신청은 원칙적으로 이용대상자 하여야 하나 이용대상자가 정신적·신체적 사유로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가족 등 보호자가 대리 신청 할 수 있다.

② 이용신청을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제2호의 건강진단서는 시설에서 요청할 때 제출한다.

1. 장기요양인정서,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
2. 국·공립병원, 보건소 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8조의 건강진단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(결핵 검진 포함)

③ 시설장은 이용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이용신청을 한 사람이나 보호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.

제5조(모집방법) 센터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모집한다.

1. 기관 내 게시판 게시
2. 유관기관 연계
3. 지역사회 네트워크
2.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

제6조(이용계약에 관한 사항) ①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센터 간 ‘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’을 체결한다.

1.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. 다만, 시설장과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.

2.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계약에 반영한다.

- 1) 장기요양 인정등급 또는 인정유효기간
- 2) 장기요양 급여비용
- 3) 비급여비용 등

② 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, 전자메일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보고 그 변경이 계약기간 중일 경우 본 계약서의 변경계약서 형식의 약식계약서 작성으로 갈음할 수 있다.

제7조(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)

① 이용료는 매년 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에 따른다.

② 장기요양등급별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월 한도 금액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,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한다.

③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한다.

④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의 50%를 가산한다.

⑤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.

⑥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이용자(보호자)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
⑦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계약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급여 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이용자(보호자)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.

제8조(보호자의 권리와 의무) ① 제6조에 따라 급여계약 시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.

1.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 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
2. 보호자 간담회, 방문상담 등을 통한 서비스평가 및 결과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3. 이용자의 건강정보 등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
4. 월 이용료 납부 의무
5. 이용자의 인적사항 등 변경 시 통보 의무
6. 센터 이용과 관련된 규칙 등 이행의무

제9조(계약해제 요건)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
1.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
2.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
3. 이용료를 월 2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(납부의사 확인)
4.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으로 타 이용인의 식사, 안전 등 이용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
5. 보호자, 이용자의 퇴소 요청이 있을 때